

제335회 임시회  
2014.10.24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24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양섭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10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4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양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, 운용중인 조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개정 내용 중 ‘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’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 20호) 및 지원대상 추가(안 제27조)
- 모호한 조문 정비
  - 투자유치위원회 설치(안 제3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“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”이란 남한주민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국내·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,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“지원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9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“<u>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</u>”이란 <u>남한주민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<u>국내·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	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<u>국내·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~ 제26조(생략)</p> <p>제27조(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)</p> <p>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"지원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 ~ 제2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)</p> <p>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, 비수도권 신·증설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"지원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## 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, 제2014-25호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 ~ 3 (생략)

4. “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”이라 함은 남한주민이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(지사·영업소·사무소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.

1.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
2. 보조금 신청시 개성공업지구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
3.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